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9

2023.04.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김길영 의원(찬성자 2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4.26.)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김길영 의원)

1. 제안이유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해 만든 조례이나 2016년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조례안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해 있는 현지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고,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에 따른 향후 지원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가능함에 따라 사문화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개성공업지구 조성 및 운영 현황

○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성공단은(66.7km)은 '개성공업지구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현대아산과 중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2004년 완공되었으며 2005년부터 기업들의 입주와 가동이 개시됨.

- 그러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성공단의 통행제한, 폐쇄, 재가동이 반복되었고, 2016년 가동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13년 4월 한·미 군사훈련¹⁾에 대해 북한의 강도 높은 반발로 북측 노동자를 철수시키고 입경을 차단하게 되자 남측 노동자들이 전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의 1차 전면 중단이 있었음.
- 당시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이 제품생산과 유통에 차질을 겪었고 남품 기일을 넘기는 등 협력 기업들에 신뢰를 잃으면서 물품 계약 파기, 투자자들의 투자 설비 반환 요청 등 피해가 발생함.
- 2013년 9월 재개된 개성공단은 124개 기업이 입주하여 연간 생산액 5억 6천만 달러, 고용인원 약 5만 5천명에 달하기도 하였으나(2016년 기준), 2016년 2월 북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발표로 재차 가동 중단이 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 움직임이 없음.
- 2020년 6월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데 이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최근에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¹⁾ 키 리졸브 연습: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게 파견· 배치하는 한·미간 연합 전시 군사 증원훈련.

다. 조례 폐지의 필요성

-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사태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가 발생 하면서 투자기업 등의 손실을 정부가 조사·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2)이 개정됨(2013.7.2.).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는 정부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 기간 차단되는 등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2월 전면 가동 중단 이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는 4개 분야 7,860억원으로, 투자자산(5,118억원), 유동자산(1,968억원), 위약금(633억원), 현지 미수금(141억원) 등임.
- 이에 정부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고자 투자자산(3,654억원)과 유동 자산(1,758억원) 등에 총 5,412억원을 지원함.
- 한편 서울시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판문점선언 등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이 기대되면서 현지기업과 협력

²⁾ 최초 제정은 2007.5.25. 시행은 동년 8.26.부터임.

이 법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남측 국내공단에 준하여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측에 설립된 개성공업지구 안의 현지기업에 대해서도 남측 법률상의 기업지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중소기업 진흥·산업안전·환경보전·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을 위한 자금·시설·기술 등의 지원이 가능해짐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2018년 6월)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협의회 구성, 현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무 했으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이후로는 관계 개선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
 - 최근 5년간 1개 기업에 1회(6,600만원) 지원 사례가 있으나, 개성 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것임.

〈 최근 5년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내역〉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액	1.21	_	_	_	_
(단위: 억원)					
지원기업	1	_	_	_	_
(단위: 개)					

※ 2018년: 국비 54백만원, 시비 66백만원 지원

- 따라서 조례의 입법 목적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조례를 더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개성공단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지원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하는 입법적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음.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59 발 의 년 월 일: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지향, 김혜지,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춘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정인,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이 현실 화될 것으로 전망해 만든 조례이나 2016년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재 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